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양 권 석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○ 근거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가. 부서별 권한위임사항의 변경(추가 및 삭제 등)

○ 제2조제1항 별표 1(시장·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)

<경제정책과>

- 관계법령 제·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
 - ▶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수리, 영업의 휴·폐업·재개의 신고수리가 시장·군수에게 직접 위임
 - ▶ 영업의 정지명령이 시·도지사 권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변경
- 통신판매 신청 등 수리, 직권말소, 위반행위 조사 등을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고, 이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위임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
 - ※ 관계법령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
<기업지원과>

- 노동조합의 설립신고, 신고증 교부, 변경신고 수리 등 17개 노동조합 (2개 시·군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)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가 시장·군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
 - ※ 관계법령 :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<자원관리과>

- 관계법령 제·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
 - ▶ 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 등 출입허가 및 토지공간 사용허가
 - ▶ 용기·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(변경) 등록업무가 시장·군수 사무로 변경
- 중복된 위임사무 삭제
 - ▶ 전기사업자,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·개조·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
- 계량, 공산품 안전관리, 전기용품 안전관리 등 위임사항에 대한 사무명 변경 및 정비
 - ※ 관계법령 : 전기사업법, 고압가스안전 관리법, 계량에 관한 법률,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, 전기용품안전 관리법

<지역개발과>

-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 분묘 등의 이전명령제도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
- 중복(타부서)된 위임사무 정비(도시관리계획 관련)
 - ※ 관계법령 : 택지개발촉진법

<교통물류과>

-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시장·군수사무로 변경
-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, 건설기계의 정기점검제도, 터미널사업자의 교통사고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시·군 위임사무에서 삭제
 - ※ 관계법령 : 자동차관리법, 건설기계관리법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
<농산지원과>

-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
 - ▶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사항이 시장·군수사무로 변경
 - ※ 관계법령 : 농어촌정비법

<축 산 과>

- 「수의사법」 개정에 따른 “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도감독” 사무와
- 「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」 폐지로 「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」에 의한 “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”이 시장·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
 - ※ 관계법령 : 수의사법,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

<문화예술과>

-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,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,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, 증축, 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·도지사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 추가(규칙의 위임사무에서 삭제)
 - ※ 관계법령 : 전통사찰보존법

○ 제2조제4항 별표 4(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)

<총 무 과>

-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기술원 장에게 위임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호봉승급 권한을 도지사로 환원

나.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등 정비

- 경제정책과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- 자원관리과 :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, 계량에 관한 법률,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,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,

전기용품안전 관리법

- 지역개발과 : 도시개발법
- 교통물류과 : 건설기계관리법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- 농산지원과 : 식물방역법
- 축 산 과 : 약사법,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
- 문화예술과 : 출판문화산업 진흥법
- 총 무 과 : 지방자치법(별표 2)

4. 검토의견

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삭제·변경·추가하고,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○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
▶ 시장·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군·위임사무에서 삭제

- 경제정책과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통신판매업자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수리, 휴·폐업·재개의 신고 수리”가 시·도지사 권한사무에서 시장·군수에게 직접 위임되어 삭제
- 기업지원과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개정에 따라 “노동조합의 설립신고, 신고증 교부, 변경신고 수리 등 17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업무”가 도지사권한사무에서 시장·군수에게 직접 위임되어 삭제
- 자원관리과는 “전기사업자의 타인 토지 등 출입허가 및 토지공간 사용

허가"와 "용기·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(변경) 등록업무"가 시장·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·군위임사무에서 삭제

- 교통물류과는 "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"이 시장·군수 권한 사무로 변경되어 시·군위임사무에서 삭제
- 농산지원과는 "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사항"이 시장·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·군위임사무에서 삭제
- 축산과는 "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도감독"사무와 "해양수산사업 시설의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"이 시장·군수 권한사무로 변경되어 시·군위임사무에서 삭제

▶ 위임사항에 대한 사무명 변경

- 자원관리과의 "계량, 공산품 안전관리, 전기용품 안전관리 등 위임사항"에 대해 사무명 변경 및 정비

▶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

- 지역개발과는 "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 분묘 등의 이전명령제도 폐지"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
- 교통물류과는 제도의 실효성확보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"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, 건설기계의 점검검진 제도, 터미널사업자의 교통사고 사장자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"가 삭제됨에 따라 시·군 위임사무에서 삭제

▶ 권한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

- 문화예술과는 "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,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, 경내지에서 건축물의 신축, 증축, 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등에 대한 허가" 권한이 시·도지사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 추가

○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조례 개정

- 경제정책과는 “통신판매 신청 등 수리, 직권말소, 위반행위 조사 등”을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고, 이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을 위임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·군 위임사무에 추가

○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조항 등 정비

- 경제정책과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- 자원관리과 :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, 계량에 관한 법률,
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,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,
전기용품안전 관리법
- 지역개발과 : 도시개발법
- 교통물류과 : 건설기계관리법,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- 농산지원과 : 식물방역법
- 축 산 과 : 약사법,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
- 문화예술과 : 출판문화산업 진흥법
- 총 무 과 : 지방자치법(별표 2)

금번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행정절차의 간소화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개정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일치,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기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하겠음.

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